

# 서울특별시 소음·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: 남창진 의원
- 나. 의안번호: 제1316호
- 다. 발의일자: 2023. 10. 13.
- 라. 회부일자: 2023. 10. 23.

### 2. 제 안 사 유

- 소음·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의 운행차 수시점검 부분이 2023년 6월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### 3. 주 요 내 용

- 가. 시장은 운행차의 소음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함(안 제14조제1항).

## 4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등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: 신·구조문대비표

## 5. 검토 의견

### 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의 운행차 수시 점검 부분이 2023년 6월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임.

#### <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>

| 현행   | 개정안  |
|--|--|
| 제14조(운행차의 수시점검 및 개선명령)<br>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다.<br>1. 운행차의 소음이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<br>2.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<br>3.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<br>② (생략) | 제14조(운행차의 수시점검 및 개선명령)<br>① -----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-----<br>-----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.<br>1.~3. (현행과 같음)<br>② (현행과 같음) |

### 나. 검토의견

- 2023년 6월 일부 개정된 「소음진동관리법」(’24.6.14. 시행) 제36조(운행차의 수시점검)에 따르면 운행차의 소음 기준 적합 여부와 소음기 등의 임의 탈착 및 경음기 추가 부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최근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이 큰 폭으로 증가<sup>1)</sup>하고 있으나 소음허용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,

1)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배달 및 대행서비스 이용량 증가에 따라 빠른 배달을 위한 과속질주, 소음기 불법 개조 등으로 인한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.

- 서울시 소음 민원 접수현황: 2019년 74건 ⇒ 2022년 280건

이는 점검 현장에서의 교통사고 위험, 단속 직원의 전문성 부족 등 지자체 단독으로 점검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.

동 법의 개정은 일선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지자체의 수시 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.

- 한편, 현행 법령은 운행차의 수시점검 및 개선명령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, 서울시는 「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」에 따라 동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고 있음.

최근 5년간 25개 자치구의 단속 실적은 총 13회 이루어졌으나, 단속 차량 174대 중 실제 과태료 부과는 1건에 지나지 않아, 현재 유명무실한 제도라 해도 무방한 실정인바, 사무위임 주체인 서울시의 적극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될 것임.

**<「서울특별시 소음진동관리 조례」 제14조에 의한 수시 점검실적>**

| 연도      | 계  |     |            | 합동단속 |     |            | 단독단속 |    |            |
|---------|----|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|------------|
|         | 단속 |     | 과태료<br>부과건 | 단속   |     | 과태료<br>부과건 | 단속   |    | 과태료<br>부과건 |
|         | 회  | 대   |            | 회    | 대   |            | 회    | 대  |            |
| 2019    | 4  | 8   | -          | -    | -   | -          | 4    | 8  | -          |
| 2020    | 10 | 10  | -          | -    | -   | -          | 10   | 10 | -          |
| 2021    | 8  | 11  | -          | 1    | 3   | -          | 7    | 8  | -          |
| 2022    | 10 | 93  | -          | 8    | 91  | -          | 2    | 2  | -          |
| ~2023.7 | 13 | 181 | 1          | 6    | 174 | 1          | 7    | 7  | 1          |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나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, 이를 통해 소음기(소음덧개)를 떼어내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이는 등 소음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- 한편 「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」〔별표〕 사무위임조례 위임사무(제5조 관련)에는 동 사무의 주관부서를 생활환경과가 아닌 대기정책과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임.